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36

발의연월일: 2021. 5. 28.

발 의 자 : 송옥주 · 김승남 · 맹성규

박성준 • 안호영 • 양정숙

윤미향・이수진(비)・장철민

최종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생태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음.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생태축을 적절하게 관 리할 필요가 있음.

하지만 현행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·복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계획적이고 방향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수립 시 고려대상에 생태축 보전·복원 내용을 포함하고, 생태축 보전·복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축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2항제8호).

법률 제 호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"함은"을 "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 치도 및 시·군·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"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태축의 복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"생태축"이라 <u>함은</u> 생물다양 | 8. ----- <u>함은 국가 또는</u> 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·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 말한다. 다)에서 -----9. ~ 18. (생략) 9. ~ 18. (현행과 같음) 제6조(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) ① 제6조(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 1. ~ 7. (생 략)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생태축의 보전 및 훼손된 생 <신 설> 태축의 복원 9. (현행 제8호와 같음) 8. (생략)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